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2012년 3월 pp.281~315
한국세무학회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실증분석*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이용규** · 오웅락*** · 노희천**** · 이석정*****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경제계, 학계에서는 경제적 단일실체인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 여러 여건이 미성숙함에 따라 시행을 늦춰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주비율이 100%인 완전지배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0년에 5월말 현재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시켜 조세부담률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차이 증가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확대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 확대시의 조세부담 영향을 분석하여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과 그 종속회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및 주석, 기타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0% 지주비율 집단, 80%이상 지주비율 집단, 50%초과 지주비율 집단 모두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차이가 증가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

---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yklee@ssu.ac.kr, 02-828-7250,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oor@ssu.ac.kr, 02-820-0588,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rhc0401@ssu.ac.kr, 02-820-0541, 교신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LSJCTA1@hanmail.net, 제1저자

논문접수일 2011년 12월 1차수정일 2012년 1월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이상 두 지주회사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주비율 50% 초과로 연결납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납세 도입 전·후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7.65%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11.46% 하락하였으며 지주비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21.24% 하락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변동계수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지주비율별 집단 간에 수평적 공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가하여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가 확대 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결납세 적용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손금이 각 지주비율별 집단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제어> 지주회사, 연결납세제도, 수평적 공평성, 유효법인세율, 변동계수

Ⅰ. 서 론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 시행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가상적으로 실증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으로 첫째,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의 변화와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즉, 지주회사가 연결납세제도 도입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부담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수평적 공평성 위주로 분석한다. 둘째, 조세부담효과 및 수평적 공평성에 대하여 현행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100%인 지주비율을 적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지주비율을 80% 이상과 50% 초과기준까지 확대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지주회사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인 연결납세제도의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위확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 접대비한도초과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결납세제도란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 단일의 실체로 볼 수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재 각국에서는 개개의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과세하는 개별법인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해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모회사 중심의 관리지배 하에 경영이 집중되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1) 이 제도의 기본요소는 기업집단 내에 있는 각 회사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쇄하여 손익을 통산하는 데 있다. 즉 법적으로는 독립된 각 회사의 손익이 마치 지점·공장 등 사내 사업소의 손익과 같이 통산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정부에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대기업의 부실자회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결납세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김진수・이준규 2002, p.18). 그러나 2002년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으며 몇 차례 연기를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시행초기를 감안하여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결손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연결법인세 적용 시 결손금 통산을 금지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3]

한편, 최근 들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배구조에 관련된 논의가 보편화 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란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투하자본을 경영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본 제공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환원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유・무형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소유구조와 관련한 이슈이다. 국내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그간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의 복잡한 출자구도를 그 특징으로 한다. 지금까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투명성 결여, 계열사 간 연쇄 부실우려 등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등이 세계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4]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그동안 금지하였던

단일법적주체의 손익과 같이 과세하게 된다. 또한 기업집단 내의 회사 간 자산양도 등의 내부거래에 의한 양도손익의 과세를 기업집단 외의 양도시점까지 연기하는 과세이연을 수반하고 있다.

2) 2004년 7월에 개최된 공청회 및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 2006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3) 단,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4) IBRD는 “제2차 구조조정 차관 프로그램”(98.9월)에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Modify restrictions under the FTA(Fair Trade Act) on the creation of holding company structures so as to permit such structures subject to conditions to avoid undue ownership concentration) ; OECD는 “한국경제 검토보고서”(98.7월)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Allowing holding companies would also help to promote transparency and restructuring)(공정거래위원회(2007),

지주회사 체제를 1999년 4월부터 허용하였으며 최근 들어 급속히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의 경우 2010년 5월 현재 92개(금융지주회사 10개 포함)사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5)]

지배구조의 투명화 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학계, 경제계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시급한 화두로 보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정부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최초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지주회사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내부 미실현손익 상계 및 결손금 등이 발생하는 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조세부담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6)] 반면에 정부로서는 연결납세제도가 과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일 수 있겠으나, 지주회사의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의 확대가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유효법인세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조세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지주회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50%까지 확대 될수록 유효법인세율의 감소 정도가 커졌다. 이는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 될수록 조세부담의 감소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수평적 공평성이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전 수평적 공평성보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더욱더 수평적 공평성 향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별납세제도가 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연결납세 적용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손금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손금이 많은 종속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 적용 시 유효법인세율의 크게 감소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첫째, 최기호(2001), 이광재(2002)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연구는 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

p.297)

5)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지주회사의 현황을 보면 2004년 8월 22개, 2006년 8월 31개, 2007년 4월 38개, 2010년 5월 92개로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6) 지주회사가 종속회사에 투자한 지분비율을 말하며 이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는 점이다. 지주회사 활성화의 요인 중 하나가 연결납세제도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만을 한정하여 분석하는 실익이 있다. 둘째, 정재연・신현걸(2004)의 논문 등에서는 지주비율을 100%와 80%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50% 초과까지 확대하여 분석한다. 셋째, 최기호(2001) 등의 논문에서는 유효법인세율 산정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의 대용치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부담액의 대용치로 법인세비용을 활용하여 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부담액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활용함으로써 표본자료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넷째, 다수의 선행논문에서는 변동계수만을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변동계수비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함으로써 검증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세부담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별납세 제도 하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및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시키면, 중요한 지주회사의 활성화 정책 중 하나가 마련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지주회사 및 그 종속법인을 표본을 선정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연구표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도입 효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관련된 연구로 오윤택・정규언(2002)은 해외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입법례를 소개하고, 연결납세제도의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제시하며, 도입할 때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소득통산형으로 연결납세유형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지분율 80%이상 기업을 연결대상으로 선정하며, 연결납세적용의 선택권은 기업에게 주는 대신 연결납세를 선택한 기업집단 대상 자회사는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7]

---

7) 김진수・이준규(2002)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2000

김광윤(2002)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 등 주요 6개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입법례와 규정 등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골격구조를 신고유형과 납세의무, 연결범위와 소수주주권의 보호 장치, 제도적용의 선택여부, 대상회사의 선택권여부와 제도의 계속성, 회계연도의 통일여부, 회계정책의 통일여부, 내부 미실현손익의 취급, 연결 신고 전 자회사 이월결손금의 공제, 연결결손금의 공제기간, 중도가입, 탈퇴의 특칙,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연결세액의 자회사 배부기준,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와 연결부가세의 부과여부 등의 13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8)]

다음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중에서 최기호(2001)는 연결실체는 단일실체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법인세부담률이 높았으며, 법인세부담률의 표준편차 역시 큰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개별납세제도하에서 연결실체와 단일실체간의 법인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론에서 지적하듯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연결실체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을 단일실체로 분류한 후 개별기업의 손익계산서 및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소득의 대용치로 이용하여 법인세부담률을 측정하고, 연결실체와 개별실체간의 법인세부담률의 차이를 분석하는 간접적인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광재(2002)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연결집단의 지배회사 중 1997년부터 2000년의 자료를 파악하였고,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을 제외한 총 205개의 기업－연(firm－year)표본을 구성하였고, 통제집단으로 개별 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표본

년과 200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실제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으며, 연결납세제도의 선택유형별로 각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손익대체형과 소득통산형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소득통산형이 연결납세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세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라고 제시하고 있다. 손익대체형은 운영상의 간편성은 있지만 연결납세제도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반면, 소득통산형은 운영상의 복잡성,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비용의 과다로 인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차선책인 손익대체형의 도입도 고려해 볼 것을 제언하고 있다.

8) 김종철(2003)은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앞서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연결납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징 등을 분석 평가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종철의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시 상당한 세수의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세수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현재 개별세법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세금우대조치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시 조세회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입해야 하며 도입 초기에는 연결대상범위의 지분율을 100%로 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강제가입 할 것을 제안하고, 점차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수평적 공평성에 관련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결법인의 변동계수가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보다 높으므로 연결법인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연결납세의 변동계수(0.812)가 개별납세의 변동계수(0.579)보다 크게 증가하여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수평적 공평성의 제고효과는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수평적과세공평성 및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결집단의 내부거래의 존재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법인세부담률에서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이 직접적 자료가 아니고[9] 재무제표의 수치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정재연・신현걸(2004)은 연결납세 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 시 지배・종속회사의 법인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게 나타났고,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 시에 개별법인세부담액의 약 84%의 연결법인세 부담액이 산정되므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측되며, 둘째, 연결집단에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경우 연결납세법위, 결손금 발생 자회사의 선택여부 및 내부 미실현손익 제거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결세무조정을 반영한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였고, 개별법인세 부담액 합계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연결자회사의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비용으로부터 역산하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홍정화・이해현(2008)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집단이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이 도입 전에 비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전과 도입 후의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비교하며 현행 법인세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 존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기업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입 전에 비해 도입후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가 강제 도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도입전과 도입후의 세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둘째,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세액공제액 및 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대비한도초과액 기본금액의 축소와 최저한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9) 유효법인세율의 분자는 실제 부담세액이 되었어야하나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 증감분을 가감하여 산정하였고 분모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이 되었어야 하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라는 재무제표 수치를 사용한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및 감면의 경우 세수증대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접대비 한도초과 기본금액의 축소와 최저한세율은 연결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구는 개별 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연결소득 조정항목을 파악하고 이들 조정항목을 연결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연결그룹에 대한 세부담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 현행 법인세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규모와 연결납세효과를 분석하여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 존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2. 선행연구와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논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은 다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 한계가 있다. 당초 정부와 경제계에서 지주회사의 활성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결납세제도를 제시하고 있고, 기업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지주회사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상당수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지주회사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시도는 의의가 있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최초 도입의도도 지주회사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지주회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실증분석관련 선행논문에서는 지주비율의 경우 100% 및 80% 이상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인 100%의 지주회사를 검토하고, 아울러 미국에서 시행중인 80% 이상, 독일에서 시행중인 50% 초과까지 확대하여 각각의 지주비율의 변화에 따른 조세부담 효과를 분석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최소 50% 초과부터 100%까지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지주비율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하여 선행논문의 다수는 유효법인세율의 산정에 있어 법인세 부담액의 대용치인 법인세비용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대용치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용치가 아닌 법인세부담액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하여 선행논문의 다수는 변동계수만을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동계수뿐만 아니라, 변동계수비율도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검증의 정확성을 높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내부거래의 이익과 손익의 통산이 가능하므로 전반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수・이준규 2002, p.29). 지주회사는 기업분할 및 합병 등을 통해 신규회사 및 장래의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조세부담의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주회사의 모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주비율에 따라서도 조세부담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다수의 종속회사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내부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져 조세부담의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 조세부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현행 법인세법상의 규정 하에 지주회사의 조세부담률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와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10)]

[가설 1−2] 연결납세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률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김진수・이준규(2002)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들고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란 각 기업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으로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으로 나누어진다. 수직적 공평성은 담세력이 다른 납세자는 서로 다른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공평성을 배제하고 수평적 공평성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수직적 공평성의 경우 비교분석이 어렵고 정확한 결론의 도출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기호(2001)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수직적 공평성의 측정을 배제하였다.[11)] 또한 지주회사의 모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주

10)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완전지배를 연결납세제도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자기주식 또는 우리사주를 감안하여 5%주식은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95%이상 보유 시 완전지배로 보도록 한다.

11) 최기호(2001)에 따르면 조세의 공평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나 두 가지 이유로 수평적 공평성만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수직적 공평성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은 조세체계가 누진적인가 아니면 역진적인가로 측정하는데 조세체계가 누진적일 경우에는 역진적인 경우나 비례적인 경우에 비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높다고

비율에 따라서도 조세부담의 공평성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이 확대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증가된다면, 연결납세제도가 과세의 질을 향상시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의 타당성과 관련된 실증적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에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이 확대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감소된다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가 과세의 질을 하락시켜 현행 개별납세제도의 유지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비해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수평적 공평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이러한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경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설 2-1] 지주회사의 조세부담에 대한 수평적 공평성은 개별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될 것이다.

2. 변수의 측정

가.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조세부담률의 대용치로 이용되는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조세부담능력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기업의 조세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Callihan(1994)은 유효법인세율을 평균유효법인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과 한계유효법인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로 나누고 있다. 전규안(1998)에 따르면 평균유효법인세율은 조세부담의 공평성(equity)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한계유효법인세율은 조세체계의 효율성(efficiency)을 측정하는 지표로 나누었다. 이광재(2002), 나 영·황명철(2005) 등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과 더불어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t-test 및 f-test의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말할 수 있지만 동등하게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진정도가 클수록 바람직한 조세체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 둘째, 수직적 공평성이 조세체계의 누진적인 정도를 의미한다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조세체계가 누진적이어야 하는 것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인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재분배기능이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납세의 유효법인세율(ETR_i)과 연결납세의 유효법인세율(ETR_c)을 구하는 기본 산식은 각각 다음의 [식1]과 [식2]로 표현될 수 있다.

$$ETR_i\ (\text{개별납세의 유효법인세율}) = \frac{\text{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액(TL)}}{\text{지주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ETI)}} \quad [식1]$$

선행연구에서는 지주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ETI)의 대용치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활용하였으나,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소득을 활용하기로 한다.[12]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액(TL)은 법인세법상의 실제 법인세부담액을 활용하기로 한다. 실제 법인세부담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법인세 부담액의 대용치로 개별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차 증가(감소)를 더하고 이연법인세대 증가(감소)를 차감하여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식2]를 활용하기로 한다.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부담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가 시행 직전으로서 직접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대용치로서 지주회사 소속 집단의 법인세부담액을 합한 금액에서 법인세 감소액을 차감하고 법인세 증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법인세 증가액 및 감소액 산정 시에는 내부미실현손익을 검토해야 하나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연구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ETR_c\ (\text{연결납세의 유효법인세율}) = \frac{\begin{array}{c}(\text{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액(TL)} \\ -\text{법인세감소액}^{*}+\text{법인세증가액}^{**})\end{array}}{\text{지주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ETI)}} \quad [식2]$$

* 법인세감소액=(접대비 한도초과 감소액[13]+종속회사의 개별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대상기업 법인세부담률

** 법인세증가액=(접대비한도초과 증가액[14]×대상기업 법인세부담률)+대상기업중 개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발생 종속회사의 법인세 증가액(2억 원×12.1%[15])

12) 각 사업연도소득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추출하였고 일부 공시되지 않은 기업은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다.

13) 접대비한도초과 감소액은 각 개별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각 지주비율 별 지주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한 뒤 각 개별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보다 각 지주비율 별 지주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액을 반영하였다.

14) 접대비한도초과 증가액은 각 개별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고 각 지주비율 별 지주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한 뒤 각 개별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보다 각 지주비율 별 지주회사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그 증가액을 반영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현행 법인세법상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지주비율 100%의 경우에 한해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 단, 근로자복 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해 행사된 주식의 합계가 5%에 이를 때까지는 완전지배로 인정되므로, 사실상 지주비율의 95%이상을 현행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 도입대상으로 포함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서 종속회사의 결손금 통산은 가능하나 연결 전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지배회사의 소득과 상계하지 못하게 제약을 가하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여 분석한 후 이에 부가하여 지주비율을 80%이상과 50%초과까지 확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 변동계수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변동계수, Gini 계수, Atkinson 지수, Berliant－Strass지수 등 전통적인 측정방법과 새로운 방법인 변동계수비율 등이 있다.[16] 수평적 공평성을 파악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위의 측정지표 중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변동계수의 경우 수평적 공평성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1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변동계수에 따라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먼저 각 지주비율별 집단의 법인세부담세액 또는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한 뒤 아래와 같이 법인세부담액 또는 유효세율에 대한 변동계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분석하게 된다. 변동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CV(TL) = \frac{SD(TL)}{E(TL)} \times 100 \quad [식3]$$

$$CV(ETR) = \frac{SD(ETR)}{E(ETR)} \times 100 \quad [식4]$$

---

15) 연결납세를 적용할 경우 각 종속회사의 이익 중 2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누진세율의 고율과 저율의 차이(24.2%－12.1%＝12.1%)만큼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단, 2010년부터는 법인세율 체계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저율부분에 대하여 12.1%(주민세 포함)에서 11%(주민세 포함)로 인하되므로 고율과 저율의 차이인 13.2%만큼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16) 백경엽(2007), “법인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관한 연구”, p.12.

17) 변동계수(CV)를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검정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Anderson(1985), Pierce(1989), Enis and Craig(1990), Allan and Iglarsh(1996), 박춘래・장호영(1994), 전규안(1997), 조한석(1997), 이계원(2001), 나 영・황명철(2005) 등이 있다.

CV(TL) : 법인세부담액 기준의 변동계수
SD(TL) : 법인세부담액의 표준편차
E(TL) : 법인세부담액의 평균
CV(ETR) : 유효법인세율 기준의 변동계수
SD(ETR) : 유효법인세율의 표준편차
E(ETR) : 유효법인세율의 평균

[식3]은 법인세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변동계수(이하 CV(TL))이다. CV(TL)의 경우 법인세부담액의 표준편차를 법인세부담액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그 변동계수가 클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 다. [식4]는 유효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한 변동계수(이하 CV(ETR))이다. CV(ETR)은 유효법인세율의 표준편차를 유효법인세율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그 변동계수가 클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최원석・백경엽(2009)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식4]의 CV(ETR)을 이용해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다. 만일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된다면 연결납세 적용 전・후의 변동계수 값은 커질 것이다.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및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 변동계수비율

변동계수가 수평적 공평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고, 변동계수비율이 수평적 공평성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는 최원석・백경엽(2009) 등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변동계수비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18] 변동계수비율(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CV ratio)은 법인세 부담액(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를 각사업연도소득(ETI)의 변동계수로 나눈 값으로 다음 식과 같이 측정된다.

$$\text{CV Ratio}_1 = \frac{\text{CV(TL)}}{\text{CV(ETI)}} = \frac{\frac{\text{SD(TL)}}{\text{E(TL)}}}{\frac{\text{SD(ETI)}}{\text{E(ETI)}}} \quad \text{[식5]}$$

$$\text{CV Ratio}_2 = \frac{\text{CV(ETR)}}{\text{CV(ETI)}} = \frac{\frac{\text{SD(ETR)}}{\text{E(ETR)}}}{\frac{\text{SD(ETI)}}{\text{E(ETI)}}} \quad \text{[식6]}$$

CV Ratio : 변동계수비율(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CV(TL) : 법인세부담액 기준의 변동계수
CV(ETR) : 유효법인세율 기준의 변동계수

18) Westort and Wagner(2002)에 따르면 변동계수는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높은 소득그룹으로 갈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CV(ETI) : 각사업연도소득 기준의 변동계수
SD(TL) : 법인세부담액의 표준편차
SD(ETR) : 유효법인세율의 표준편차
SD(ETI) : 각사업연도소득의 표준편차
E(TL) : 법인세부담액의 평균
E(ETR) : 유효법인세율의 평균
E(ETI) : 각사업연도소득의 평균

위 [식5]에서 구한 변동계수비율(CV $Ratio_1$)은 법인세부담액의 변동계수를 각사업연도소득의 변동계수로 나눈 값이고, 위 [식6]에서 구한 변동계수비율(CV $Ratio_2$)은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를 각사업연도소득의 변동계수로 나눈 값이다. 이는 변동계수의 장점인 계산의 편의성과 직관적인 이해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동계수의 수학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원석・백경엽(2009)은 법인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변동계수보다는 변동계수비율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집단별 연결납세 적용 시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 및 향상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동계수를 이용한 분석에 추가하여 [식6]을 활용하여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조세부담률의 변동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도입 전・후의 조세부담률의 변동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세부담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법인세부담률의 변동을 분석하는 이유는 첫째, 연결납세 도입 전과 도입 후에 법인세부담률의 변동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변동차이가 지주회사에서는 조세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석의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변동요인을 확인하여 법인세부담률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주비율 적용범위를 현행 법인세법상의 규정인 지주비율 100% 및 80%이상과 50%초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식7]과 같이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지주회사의 이익과 상계시켜 법인세부담을 줄이는 데에 있다. 따라서 결손금(LOSSR)은 연결납세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경우 접대비한도 규정에 대한 기준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접대비한도 초과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연결납세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귀모형에 접대비한도초과액(ENTOVERR)을 반영하였다.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적용 시 지주비율에 따른 법인세부담률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전규안(1997)은 법인세부담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채비율, 매출액 중 수출비중, 자본집약도, 기업규모를 제시하고 있으며, 최기호(2001)는 상기 요인 중 매출액 중 수출비중을 빼고 이익수준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유효법인세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기업규모를 포함하고, 종속회사의 개수, 세액공제 및 감면을 추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매출액 중 수출비중을 뺀 이유는 지주회사의 특성상 수출비중을 포함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이익수준변수는 표본이 적기 때문에 분석의 실익이 없어 배제하기로 한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에서 유효법인세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내부미실현손익과 대손충당금 등은 표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분석의 실익이 없고 유의적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제하기로 한다.[19)]

$$ETRT_{100}\ (ETRT_{80}, ETRT_{50}) = \beta_0 + \beta_1 LOSSR + \beta_2 ENTOVERR + \beta_3 NUM + \beta_4 TCR + \beta_5 DE + \beta_6 FIX + \beta_7 SIZE + \mu \quad [식7]$$

$ETRT_{100}$: 연결납세기업(100% 지주비율)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ETRT_{80}$: 연결납세기업(80%이상 지주비율)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ETRT_{50}$: 연결납세기업(50%초과 지주비율)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LOSSR : 결손금을 매출로 나눈 값
ENTOVERR :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매출로 나눈 값
NUM : 종속회사의 수
TCR :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매출로 나눈 값
DE :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로서 총부채/총자산
FIX :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집약도로서 감가상각 자산/총자산
SIZE : 연결재무제표의 기말총자산장부가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μ : 오차항

4. 표본의 선정

본 연구를 위한 표본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등록한 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지주회사와 그 종속회사 중에서 다음 회사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여 선정한다.

⑴ 종속회사 중 외국법인
⑵ 해운업영위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
⑶ 종속회사 중 지주비율이 50%이하 법인
⑷ 소규모 지주회사(자산 100억 미만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

19) 최기호(2001)는 수출비중변수를 제외하고 이익수준변수를 추가한 이유로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는 수출비중변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며 이익수준변수를 추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체계가 누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익수준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부담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현행 법인세율 체계가 비례세에 가깝다는 결과를 참조하여 이익수준변수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⑸ 대상되는 종속회사가 없는 지주회사
⑹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상기와 같은 표본을 선정한 이유는, (1)의 외국법인은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은 물론 소재지국에서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특성으로 연결납세의 의무가 없으며, (2)의 해운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상이를 이유로 연결납세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제외한다. (3)의 50%이하 종속법인의 경우 해외 사례 및 선행논문에서 연결납세 적용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므로 제외한다. (4)의 소규모 자회사의 경우는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그 규모로 보아 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한다. (5)의 경우에는 개별납세와 연결납세가 같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한다. (6)의 경우에는 분석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표본에서 제외한다. 표본 기업의 선정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본기업 선정결과

지주회사 기업(2010년 5월 31일 현재)	92개(512개)
50%초과 지분 소유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	(3개)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1개)
최종 분석대상 기업	78개(212개)

(주) ( )안의 숫자는 종속회사의 수임

Ⅳ. 실증분석결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 분석대상기업 78개의 각 지주비율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현황은 <표 2>와 같다. Panel A는 현행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100% 종속법인과 지주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각사업연도소득의 평균값은 137,953백만 원이고 법인세부담액의 평균값은 750백만 원이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값은 20.47%이고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한 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값은 18.97%로서 약 1.50%P 감소된다. 한편 지주회사의 종속법인 평균개수는 2.8696개이며 대상 종속회사의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까지 보유하고 있다.

〈표 2〉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분석 표본의 기술통계

(단위 : 백만 원, 개, 소수점 4자리)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Panel A : 지주비율 100% (N=69)				
SALES	2,566,964	8,899,440	766	52,499,636
ASSET	12,255,113	49,973,934	10,240	277,737,000
DEBT	10,049,967	42,927,297	3,104	239,827,000
FIX	183,357	469,369	42	3,341,194
TAXa	25,716	80,546	0	571,698
TAXb	27,394	84,036	0	572,023
TC	750	2,216	0	14,066
ENTOVER1	1,134	4,631	0	34,790
ENTOVER2	1,088	4,319	0	34,712
LOSS	7,315	36,432	0	271,999
ETI	137,953	543,490	−5,989	4,334,494
NUM	2.8696	1.9622	1.0000	9.0000
ETRa	0.1897	0.0752	0	0.3045
ETRb	0.2047	0.0879	0	0.4752
Panel B : 지주비율 80% (N=67)				
SALES	2,778,805	9,053,870	766	52,499,636
ASSET	12,673,911	50,673,343	10,240	277,737,000
DEBT	10,367,068	43,534,823	3,104	239,827,000
FIX	200,210	484,714	42	3,341,194
TAXa	27,623	81,423	0	571,698
TAXb	29,167	84,918	0	572,023
TC	938	2,296	0	14,066
ENTOVER1	1,807	6,888	0	42,476
ENTOVER2	1,752	6,676	0	42,411
LOSS	6,642	36,441	0	271,999
ETI	148,857	550,359	−49	4,334,494
NUM	3.4328	2.0833	1.0000	11.0000
ETRa	0.2020	0.0594	0	0.3045
ETRb	0.2125	0.0706	0	0.4752

〈표 2〉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분석 표본의 기술통계 (계속)

(단위 : 백만 원, 개, 소수점 4자리)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Panel C : 지주비율 50% (N=68)				
SALES	3,093,587	9,065,388	6,077	52,814,274
ASSET	13,056,441	50,781,889	111,933	280,598,000
DEBT	10,605,117	43,668,305	9,026	242,509,000
FIX	323,928	637,220	1,089	3,343,798
TAXa	31,521	82,437	0	589,104
TAXb	33,456	85,860	10	590,740
TC	1,721	5,044	0	37,987
ENTOVER1	1,977	6,861	0	42,815
ENTOVER2	1,924	6,672	0	42,934
LOSS	8,354	36,620	0	271,999
ETI	168,224	553,775	−37	4,405,551
NUM	4.5588	2.5938	2.0000	16.0000
ETRa	0.1933	0.0616	0	0.3045
ETRb	0.2281	0.0924	0	0.5258

주1) SALES :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의 총매출. ASSET : 총자산. DEBT : 총부채. FIX : 감가상각자산. TAXa : 연결납세 후 법인세부담액. TAXb : 연결납세 전 법인세부담액. TC : 세액공제 및 감면액. ENTOVER1 : 연결납세 후 접대비한도초과액. ENTOVER2 : 연결납세 전 접대비한도초과액. LOSS : 결손금. ETI : 각사업연도소득. NUM : 종속회사의 수. ETRa : 연결납세 후 유효법인세율. ETRb : 연결납세 전 유효법인세율

2) 최종분석 대상기업에서 연결납세 적용 후 각사업연도소득이 음수인 경우 유효법인세율의 산정이 불가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이하 동일함)

Panel B는 연결납세제도를 80%이상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평균값은 148,857백만 원이고 법인세부담액의 평균값은 938백만 원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값은 21.25%이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유효법인세율의 평균값은 20.20%로 1.05%P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회사의 평균개수는 3.4328개이고 최소 1개에서 최대 11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Panel C는 지주비율을 50%초과까지 확대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평균값은 168,224백만 원이고 법인세부담액은 평균 1,721백만 원이다.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은 22.81%이고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 유효법인세율

은 19.33%로 3.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회사의 개수는 평균 4.5588개이고 최소 2개에서 최대 16개를 보유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전·후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서 종속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에서 보여주며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표 3〉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분석모형 변수 간 상관분석

변수명	ETRT	LOSSR	ENTOVERR	NUM	TCR	DE	FIX	SIZE
Panel A : 지주비율 100%(N=69)								
ETRT	1.0000							
LOSSR	−0.3581***	1.0000						
ENTOVERR	−0.1778	−0.0309	1.0000					
NUM	−0.0290	−0.0839	0.1598	1.0000				
TCR	0.0583	0.0437	−0.3617***	−0.1255	1.0000			
DE	−0.2555**	0.1868	−0.0557	0.3056**	−0.2033*	1.0000		
FIX	−0.3685***	−0.0907	0.0548	0.0171	−0.0001	0.2085*	1.0000	
SIZE	−0.1925	−0.0457	0.1001	0.7373***	−0.1465	0.4842***	−0.0698	1.0000
Panel B : 지주비율 80%(N=67)								
ETRT	1.0000							
LOSSR	−0.5481***	1.0000						
ENTOVERR	−0.1441	0.0887	1.0000					
NUM	0.0200	−0.0323	0.1286	1.0000				
TCR	0.0224	0.3310***	0.0214	−0.0159	1.0000			
DE	−0.2889**	−0.2152*	−0.2152*	0.2621**	−0.1559	1.0000		
FIX	−0.0130	−0.0861	0.0990	0.0722	0.1046	0.1642	1.0000	
SIZE	−0.1906	−0.0459	0.1006	0.6763***	−0.1532	0.4984***	−0.0468	1.0000
Panel C : 지주비율 50%(N=68)								
ETRT	1.0000							
LOSSR	−0.6335***	1.0000						
ENTOVERR	−0.0081	0.1117	1.0000					
NUM	0.0264	−0.0987	0.1993*	1.0000				
TCR	0.0657	0.1326	0.0344	−0.0686	1.0000			
DE	−0.0105	−0.0048	−0.1148	0.2708**	−0.2023*	1.0000		
FIX	0.0507	−0.0473	0.0819	0.0776	0.0335	0.1672	1.0000	
SIZE	0.0790	−0.0694	0.1370	0.6592***	−0.1900	0.5461***	−0.0190	1.0000

주1) ETRT : 연결납세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LOSSR : 결손금을 매출로 나눈 값.
ENTOVERR :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매출로 나눈 값. NUM : 종속회사의 수
TCR :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매출로 나눈 값.
DE :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로서 총부채/총자산
FIX :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집약도로서 감가상각 자산/총자산
SIZE : 연결재무제표의 기말총자산 가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2)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Panel A는 지주비율 100% 연결납세를 적용시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사용될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는 결손금을 매출로 나눈 값, 부채비율, 자본집약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세액공제 및 감면율과 접대비 한도초과율, 부채비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율과의 상관관계는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반면 부채비율과 종속회사의 수, 규모와 종속회사의 수, 부채비율과 종속회사의 수, 부채비율과 자본집약도의 경우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거나 0.4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20)]

Panel B는 지주비율 80% 이상을 연결납세 적용시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종속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와 독립변수인 결손금을 매출로 나눈 값, 부채비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독립변수 간에는 부채비율과 결손금율, 접대비한도초과와 부채비율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세액공제 및 감면율과 결손금율, 부채비율과 종속회사의 수, 규모와 종속회사의 수, 부채비율과 규모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의 독립변수 간에는 유의성이 없다.

Panel C는 지주비율 50% 초과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시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종속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와 결손금을 매출로 나눈 값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과 세액공제 및 감면율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이며, 종속회사의 수와 접대비 한도초과율, 종속회사의 수와 부채비율, 종속회사의 수와 규모, 부채비율과 규모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독립변수 간에는 유의성이 없다.

[가설 1－1]과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대한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차이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20)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인 <표 7>에서 VIF는 모두 3 이하임.

〈표 4〉 연결납세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Panel A : 유효법인세율 감면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구 분		G_{100}	G_{80}	G_{50}
t−검정	평균	−0.0149	−0.0105	−0.0348
	p 값	0.0047	0.0061	0.0004
윌콕슨 부호순위	중위수	0.0000	0.0000	−0.0012
	p 값	0.0849	0.1532	0.0001

Panel B : 연결납세 확대에 대한 차이분석

지주비율	회사수	ETRT		ANOVA (F−값)	Kruskal−Wallis (χ^2)	Duncan[21]
		평균	표준편차			
100%	69	−0.0149	0.0424	4.01^{**}	5.53^{*}	A
80%	67	−0.0104	0.0302			A
50%	68	−0.0348	0.0763			B

주) G100 : 지주비율 100%이상 지주회사 집단.
G80 : 지주비율 80% 이상 지주회사 집단.
G50 : 지주비율 50% 초과 지주회사 집단
ETRT :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먼저 Panel A에서 모수 검정인 t−검정결과는 지주비율이 100%에 연결납세를 적용 시 평균 0.01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에서 유의성이 있다. 지주비율 80%에 연결납세를 적용 시 평균 0.01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에서 유의성이 있다. 지주비율 50%까지 확대하여 연결납세 적용 시 평균 0.03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에서 유의성이 있다. 상기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지주비율 집단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본 결과로서 [가설 1−1]은 각 지주비율에 따른 연결납세 적용 시 유효법인세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주비율이 확대 될수록 조세부담률의 감소차이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집단 간의 ANOVA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Panel B에서 지주비율이 100%일 경우 −0.0149와 지주비율 80%일 경우 −0.0104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주비율 50%로 확대 시에는 −0.0348로 조세부담의 감소규모가 커진다. 이는 지주비율100%에서 지주비율 80%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조세부담률의 감소 차이가 커진다고 볼 수 없지만, 지주비율이 50%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조세부담률의 감소차이가 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21) 각 지주비율집단간의 차이정도를 측정하여 A, B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Kruskal－Wallis분석에서도 χ^2이 10%에서 유의적인 5.53이다. 이는 지주비율 집단 간 차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하여 어느 지주비율 집단이 하락폭 정도가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ncan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주비율 50%인 집단에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면 지주비율 100%집단 및 지주비율 80%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락폭은 평균 －0.034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에서는 조세부담률 감소정도를 판단할 수 없지만 지주비율을 50%까지 확대할수록 조세부담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Panel A에서 각 지주비율 집단별 변동계수를 보여준다. 연결납세를 도입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은 각 지주비율별로 평균 0.2047, 0.2125, 0.2282로 나타났으며 연결납세를 도입한 후 유효법인세율은 각 지주비율별로 평균 0.1898, 0.2021, 0.1933으로 나타나 각 집단별로 유효법인세율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Panel B를 보면, 지주비율 100%에 연결납세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42.97이고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39.68이다. 이는 연결납세를 도입한 후 약 7.65%의 변동계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결납세 도입하기 전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되었으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지주비율 80%이상에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33.24이고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29.43이다. 이는 연결납세를 도입한 후 약 11.46%의 변동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지주비율 100%집단보다 3.81%정도 더 감소하였다. 상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 되었으며 지주비율 100% 집단에 비해 더욱더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주비율이 50%초과 집단에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40.52이고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31.91이다. 이는 연결납세를 도입한 후 약 21.24%의 변동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지주비율 100%집단에 비해서는 약 13.59%가 더 감소되었으며 지주비율 80% 이상 집단에 비해서는 약 9.78%가 더 감소하였다. 역시 상기와 마찬가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 되었으며 지주비율이 확대될수록 수평적공평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주비율이 확대되는 것이 공평한 조세부담률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변동계수를 이용한 수평적 공평성 분석

Panel A : 지주비율 집단별 변동계수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변동계수
G_{100} (N=69)	ETRb	0.2047	0.0880	42.9745
	ETRa	0.1898	0.0753	39.6755
G_{80} (N=67)	ETRb	0.2125	0.0706	33.2364
	ETRa	0.2021	0.0595	29.4285
G_{50} (N=68)	ETRb	0.2282	0.0925	40.5222
	ETRa	0.1933	0.0617	31.9061

Panel B : 지주비율 집단별 변동계수 하락률

구 분	G_{100}(N=69)	G_{80}(N=67)	G_{50}(N=68)
ETRb	42.97	33.24	40.52
ETRa	39.68	29.43	31.91
변동계수 하락률	−7.65%	−11.46%	−21.24%

주1) ETRb : 연결납세 적용 전 유효법인세율
ETRa : 연결납세 적용 후 유효법인세율
2) G100 : 지주비율 100%이상 지주회사 집단
G80 : 지주비율 80% 이상 지주회사 집단
G50 : 지주비율 50% 초과 지주회사 집단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변동계수비율을 활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Panel B를 보면 지주비율 100%에 연결납세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 세율의 변동계수비율은 0.11이고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비율은 0.10이므로 연결납세를 도입한 후 약 0.01의 변동계수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결납세를 도입하기 전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 되었다는 증거이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주비율 80%이상에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비율은 0.09이고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비율은 0.08이다. 이는 연결납세를 도입한 후 약 0.01의 변동계수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주비율이 50%초과 집단에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전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0.12이고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계수는 0.10이다. 이는 연결납세를 도입한 후 약 0.02의 변동계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변동계수비율의 하락률을 보면 지주비율 100%집단은 약 9.09%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은 약 11.11% 하락하였으며 지주비율 50% 초과 집단은 약 16.66% 감소함으로써 지주비율을 확대될수록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집단에서 더 많은 변동계수비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지주비

율이 확대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표 6〉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한 수평적 공평성 분석

(단위(ETI) : 백만 원)

Panel A : 지주비율 집단별 변동계수비율

구 분		평균값	표준편차	변동계수
G_{100} (N=69)	ETRb	0.2047	0.0880	42.9745
	ETRa	0.1898	0.0753	39.6755
	ETI	137,953	543,490	393.9660
G_{80} (N=67)	ETRb	0.2125	0.0706	33.2364
	ETRa	0.2021	0.0595	29.4285
	ETI	148,857	550,359	369.7234
G_{50} (N=68)	ETRb	0.2282	0.0925	40.5222
	ETRa	0.1933	0.0617	31.9061
	ETI	168,224	553,775	329.1880

Panel B : 지주비율 집단별 변동계수비율 하락률

구 분	G_{100}(N=69)	G_{80}(N=67)	G_{50}(N=68)
ETRb	0.11	0.09	0.12
ETRa	0.10	0.08	0.10
변동계수비율 하락률	−9.09%	−11.11%	−16.66%

주1) ETRb : 연결납세 적용 전 유효법인세율
ETRa : 연결납세 적용 후 유효법인세율
2) G100 : 지주비율 100%이상 지주회사 집단
G80 : 지주비율 80% 이상 지주회사 집단
G50 : 지주비율 50% 초과 지주회사 집단

연결납세 도입으로 인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 변동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지주비율 100%를 연결납세 적용 시 결손금을 매출로 나눈 값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주비율 80% 이상과 지주비율 50% 초과에서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경우 지주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증감은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회사의

개수 및 세액공제 및 감면의 경우 각 지주비율 집단별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종속회사의 개수 및 세액공제 및 감면의 경우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연결납세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 변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ETRT = \beta_0 + \beta_1 LOSSR + \beta_2 ENTOVERR + \beta_3 NUM + \beta_4 TCR + {}_5 DE + \beta_6 FIX + \beta_7 SIZE + \mu$

변수	G_{100}		G_{80}		G_{50}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0.17	2.18**	-0.04	0.80**	-0.16	-1.18
LOSSR	-1.01	-2.65**	-2.81	-6.00***	-4.02	6.70***
ENTOVERR	-12.02	-1.56	-6.98	-1.77*	6.27	0.58
NUM	0.01	1.61	0.00	1.01	-0.00	1.10
TCR	-0.05	-0.17	0.39	1.49	1.17	1.66
DE	-0.00	-0.16	-0.04	-2.74***	-0.01	-0.25
FIX	-0.13	3.24***	0.02	-0.80	0.02	0.28
SIZE	-0.01	-2.12**	-0.00	-0.65	-0.01	1.10
MODEL		4.38***		7.53***		6.79***
adj. R^2	0.26		0.41		0.38	
표본크기	68		66		67	

주1) ETRT : 연결납세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의 변동. LOSSR : 결손금을 매출로 나눈 값. ENTOVERR :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매출로 나눈 값. NUM : 종속회사의 수. TCR :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매출로 나눈 값. DE : 연결재무제표의 부채비율로서 총부채/총자산. FIX :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집약도로서 감가상각 자산/총자산. SIZE : 연결재무제표의 기말총자산 가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2) ***, **, * : 각각 1%, 5%, 10%의 수준에서 유의적임

3) MODEL의 수치는 F통계량이며 모형전체의 유의성임

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경제계, 학계에서는 꾸준히 경제적 실체인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 여러 여건이 미성숙을 이유로 시행을 늦춰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주비율이 100%인 완전지배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0년에 5월말 현재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시켜 조세부담률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차이 증가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확대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 확대시의 조세부담 영향을 분석하여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후 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0% 지주비율 집단이 −0.0149, 80%이상 지주비율 집단이 −0.0104, 50%초과 지주비율 집단이 −0.0348로 각 지주비율 집단에서 모두 1%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유효법인세율이 모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차이가 증가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 이상의 두 지주회사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주비율 50% 초과로 연결납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주비율 50%까지 확대하여 연결납세 적용 시 조세부담의 감소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납세 도입 전·후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7.65%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11.46% 하락하였으며 지주비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21.24% 하락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 집단에서는 변동계수비율이 9.09%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11.11% 하락하였으며 지주비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비율이 16.66% 하락하였다. 이는 지주비율별 집단 간에 수평적 공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가하여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가 확대 될 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결납세 적용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손금이 각 지주비율별 집단 모두 1%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보다 유효법인세율이 하락한다. 이는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조세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지주회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정부에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50%까지 확대 될수록 유효법인세율의 감소 정도가 커진다. 이는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 될수록 조세부담의 감소 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연결납세를 적용한 후의 수평적 공평성이 연결납세를 적용하기 전 수평적 공평성보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수평적 공평성 향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별납세제도가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며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때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를 확대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연결납세 적용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손금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손금이 많은 종속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 적용 시 유효법인세율의 크게 감소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거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의 활성화 및 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이며 지주회사의 적극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의 확대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정부입장에서도 과세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연결납세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지주비율 적용범위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아울러 세수감소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검토하여 점진적인 연결납세제도의 적용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2009년 1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결납세 제도의 특성상 결손금 등은 추후 유효법인세율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자료만을 토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및 적용하기 직전 연구이다. 그러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실제 자료에 의한 수치에 비해 자료의 정확도가 결여될 수 있다. 특히 연결납세 적용 후의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연결납세 적용 시 조세부담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셋째, 현행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이 92개사로 연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이 최근 추세대로 증가하고 연결납세제도 도입 후 다수의 기업들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여 표본수 및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활발한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007.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김광윤. 2002.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2호 : 35－59.

김종철. 2003.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김진수・이준규. 200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나 영・황명철. 2005.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22권 제3호 : 63－90.

박춘래・장호영. 1994.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분석”. 회계학연구 제19호 : 275－297.

백경엽. 2007. “법인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윤택・정규언. 200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회계와감사연구 제37호 : 3－35.

이광재. 200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1권 제5호 : 1121－1228.

이계원. 2001.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 7－33.

전규안. 1997.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 23－60.

전규안. 1998. “조세부담의 공평성 분석”. 세무학연구 제11호 : 7－42.

정재연・신현걸. 2004. “연결납세와 개별납세간의 법인세부담액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40호 : 107－130.

조한석. 1997.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기호.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6권 : 189－206, 한국회계정보학회.

최원석・백경엽. 2009.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 측정에 대한 재검토”.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37－168.

홍정화・이해현. 2008.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세무효과 및 중소기업 세부담액 변화”.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3호 : 1235－1258.

Allan, R. G., and H. J. Iglarsh. 1996. "A Cluster Analysis of Horizontal Tax Equity".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8(1) : 31－47.

Anderson, K. E. 1985. "A Horizontal Equity Analysis of the Minimum Tax provisions An Empirical Study". *The Accounting Review* 60(3) : 357－371.

Callihan, D. 1996. "Corporates Effective Tax Rates : A Synthesis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13) : 1－43.

Enis, C. R., and D. L. Craig. 1990. "An Empirical Analysis of Equity and Efficiency Attributes of Degressive Forms of a Flat Tax".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1(2) : 17－33.

Pierce, B. J. 1989. "The Equity and Revenue Effects of proposed Changes in the Status quo".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0(2) : 54 - 67.

Westort, P. J., and Wagner, J. M. 2002. "Toward a Better Measure of Horizontal Equi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4(1) : 17 - 28.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Focused on Holding Company-

Yongkyu Lee* · Oung Rak O** · Hee Chun Roh*** · Seog-Jeong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empirically. It is willing review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and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against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range by analyzing the influence on tax burden along difference analysis of the effec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applying object for holding company concretely.

Since introducing the system of holding company in April, 1999, there has been constant discussion over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economic and academic world called for rapid introduction of it emphasizing that the unfairness of tax burden can be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to holding company which is the economic single substance, government introduced it targeting complete governance corporate which's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is 100% on January 1, 2010 after prolonging its execution due to incompleteness of the given several conditions such as decrease of tax income. This thesis is willing to compare and analyze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is increased or not along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and the extension of tax burden ratio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pplying object by apply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argeting the registered company as holding company as of May, 2010, compare and analyze whether the horizontal fairness is improved or not along the difference of horizontal fairness of tax burden and the range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n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of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gainst consolidated tax return by analyzing influence on tax burden when extending introduction effect of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yklee@ssu.ac.kr
**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oor@ssu.ac.kr
***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Accounting, rhc0401@ssu.ac.kr
**** Ph.D,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Accounting, LSJCTA1@hanmail.net

The period of this study is one year for 2009. I abstracted the sample data utiliz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registered in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heets, annotation in the external audit report and other related data after selecting the registered companies as holding company and their subsidiary companies.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there is difference or no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ax burden got decreased all for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when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as introduced.

Also,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get increased or not as the applying scop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s extended, I could not find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but I could recognize the decreasing degree of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got increased when applying scope of consolidated tax return was extended.

As the results of verifying horizontal fairnes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008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1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2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Additionally, as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it was the same a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t means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er proportion share ownership regarding horizontal fairness and it was recognized that horizontal fairness was improved as much as applying scop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was extended also.

As the results of executing regression analysis to recognize the factors influencing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when applying consolidated tax return, the deficit appeared to have the meaningful negative value for all groups per proportion share ownership. Through this, we can recognize that it influences the change of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consistently in case of the deficit.

<Key words> holding company, consolidated tax return, horizontal tax equity, effective tax rate, Coefficient of Variation

〈부 록〉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지주회사명	사업/순수	상장여부	설립/전환일	자산총액	지주비율	부채비율	자/손/증손회사 수 (상장회사)					
								자회사 (상장)		손자회사 (상장)		증손회사 (상장)	
일반지주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	순수	비상장	2000－01－01	909,543	89.03	13.66	9	2	1	0	0	0
	㈜ 온미디어	사업	상장	2000－06－15	434,539	66.51	2.29	9	0	0	0	0	0
	㈜엘지*	순수	상장	2001－04－03	6,956,279	91.98	11.63	15	7	28	4	2	0
	㈜동원엔터프라이즈	순수	비상장	2001－04－16	381,432	87.04	48.34	9	3	6	0	0	0
	㈜대교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1－05－04	586,750	93.75	0.75	7	1	6	0	0	0
	㈜세아홀딩스*	순수	상장	2001－07－03	929,286	86.78	24.69	14	1	1	0	0	0
	한국컴퓨터지주㈜	순수	비상장	2002－05－27	191,730	53.45	50.26	7	3	2	0	0	0
	㈜대웅	사업	상장	2002－10－02	236,106	94.04	4.69	17	1	6	0	0	0
	㈜농심홀딩스	순수	상장	2003－07－10	514,855	98.86	16.21	6	2	0	0	0	0
	㈜이수	순수	비상장	2003－08－01	170,678	92.58	자본잠식	5	2	3	1	0	0
	동화홀딩스㈜	순수	상장	2003－10－01	289,339	88.07	22.61	12	0	0	0	0	0
	㈜다함이텍	사업	상장	2004－01－01	267,946	73.98	1.25	3	0	0	0	0	0
	삼성종합화학㈜*	순수	비상장	2004－01－01	869,320	92.57	2.07	1	0	0	0	0	0
	㈜지에스*	순수	상장	2004－07－07	4,455,719	89.85	25.55	5	1	19	1	0	0
	대상홀딩스㈜	순수	상장	2005－08－01	334,650	55.70	2.62	4	1	1	0	0	0
	㈜비에스이홀딩스	사업	상장	2006－01－01	115,998	79.70	20.86	3	0	0	0	0	0
	㈜엘아이지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6－01－01	261,001	90.34	28.08	4	0	2	0	0	0
	㈜에이치씨엔*	사업	비상장	2006－01－01	352,990	84.91	37.39	9	1	0	0	0	0
	평화홀딩스㈜	순수	상장	2006－05－02	173,569	58.78	55.84	6	2	3	0	0	0
	㈜노루홀딩스 (구 디피아이 홀딩스)	사업	상장	2006－06－02	254,647	65.28	48.68	7	1	5	0	0	0
	KPX홀딩스㈜	순수	상장	2006－09－01	273,376	57.52	2.36	5	3	0	0	0	0
	㈜한국전자홀딩스 (구 케이이씨홀딩스)	순수	상장	2007－01－01	146,383	57.65	6.25	4	1	1	0	0	0
	㈜씨제이오쇼핑*	사업	상장	2007－01－01	969,863	57.79	94.14	5	0	7	0	1	0
	㈜태평양	순수	상장	2007－01－01	1,432,528	76.51	7.98	6	2	0	0	0	0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계속)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지주회사명	사업/순수	상장여부	설립/전환일	자산총액	지주비율	부채비율	자/손/증손회사 수 (상장회사)					
								자회사 (상장)		손자회사 (상장)		증손회사 (상장)	
일반지주회사	TAS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순수	비상장	2007－04－01	297,823	98.61	자본잠식	1	0	1	0	0	0
	㈜네오위즈	순수	상장	2007－04－26	192,523	68.53	27.03	7	1	2	0	0	0
	에스케이㈜*	순수	상장	2007－07－03	9,619,693	96.63	41.74	8	5	42	8	8	0
	㈜한진중공업홀딩스*	순수	상장	2007－08－01	1,089,225	89.02	4.08	4	1	1	0	0	0
	한국멀티플렉스투자㈜	순수	비상장	2007－08－17	217,952	99.19	88.01	1	0	0	0	0	0
	씨제이㈜*	순수	상장	2007－09－04	2,781,130	62.77	40.41	14	6	33	1	3	0
	㈜웅진홀딩스*	사업	상장	2008－01－01	1,475,524	93.90	102.99	10	2	7	1	1	0
	㈜포휴먼	사업	상장	2008－01－01	150,059	53.74	8.23	1	0	1	1	0	0
	㈜중외홀딩스	사업	상장	2008－01－01	152,427	71.41	15.28	6	2	4	0	0	0
	㈜DH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8－01－01	244,992	98.46	0.67	2	0	2	0	0	0
	㈜심명산업개발	순수	비상장	2008－01－01	135,195	82.55	13.71	13	0	2	0	0	0
	㈜한림토건	사업	비상장	2008－01－01	133,149	91.39	7.84	2	0	1	0	0	0
	㈜진양홀딩스	순수	상장	2008－01－07	140,937	92.62	1.66	9	3	0	0	0	0
	㈜S&T홀딩스	순수	상장	2008－02－05	404,847	98.23	9.59	5	4	3	0	0	0
	㈜반도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8－03－03	298,746	88.21	11.25	3	0	0	0	0	0
	SBS미디어홀딩스㈜	순수	상장	2008－03－04	482,664	85.25	2.16	6	2	5	0	0	0
	㈜티이씨앤코*	사업	상장	2008－05－02	101,264	58.75	13.96	2	0	2	0	0	0
	㈜동성홀딩스	순수	상장	2008－05－14	100,847	47.24	6.34	7	2	3	0	0	0
	㈜엘에스*	순수	상장	2008－07－02	1,617,995	91.38	11.34	4	1	14	1	1	0
	㈜풀무원	사업	비상장	2008－07－03	243,591	51.97	135.03	8	0	0	0	0	0
	하이트홀딩스㈜*	순수	상장	2008－07－03	1,064,356	90.56	52.95	4	0	7	0	0	0
	㈜풍산홀딩스	순수	상장	2008－07－03	381,826	71.26	17.40	5	2	3	0	0	0
	일진홀딩스	순수	상장	2008－07－04	197,993	72.31	8.63	6	2	2	0	0	0
	키스코홀딩스㈜	순수	상장	2008－09－03	437,342	94.06	13.19	4	1	1	0	0	0
	㈜풀무원홀딩스	순수	상장	2008－09－30	234,232	65.25	38.66	7	0	11	0	0	0
	알파라발한국홀딩㈜	순수	비상장	2008－09－30	119,029	99.95	263.43	1	0	0	0	0	0
	프라임개발㈜	사업	비상장	2008－10－01	953,624	55.49	388.27	17	2	7	0	0	0
	㈜티브로드 홀딩스	사업	비상장	2008－11－11	413,621	58.89	170.51	7	1	3	0	3	0
	㈜동일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8－12－01	169,737	95.58	3.00	2	0	0	0	0	0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계속)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지주회사명	사업/순수	상장여부	설립/전환일	자산총액	지주비율	부채비율	자/손/증손회사 수 (상장회사)					
								자회사 (상장)		손자회사 (상장)		증손회사 (상장)	
일반지주회사	㈜디와이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8－12－23	263,746	71.31	43.81	2	0	1	1	4	0
	㈜디와이에셋	순수	비상장	2008－12－23	104,595	75.84	0.01	1	1	6	0	1	0
	㈜두산*	사업	상장	2009－01－01	2,791,041	57.55	78.27	11	3	8	2	2	0
	두산모트롤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9－01－01	194,741	95.58	298.68	1	0	0	0	0	0
	한국신용정보㈜	사업	상장	2009－01－01	185,437	60.12	57.09	9	3	6	0	0	0
	㈜영앤선개발	순수	비상장	2009－01－01	120,878	91.39	24.52	1	0	2	1	1	0
	㈜넥슨	사업	비상장	2009－01－01	727,835	67.70	140.45	6	0	0	0	0	0
	㈜대명홀딩스	사업	비상장	2009－01－01	378,474	99.84	41.89	4	0	7	0	0	0
	한세예스24홀딩스㈜	순수	상장	2009－06－30	121,655	76.35	11.01	2	2	1	0	0	0
	㈜영원무역홀딩스	사업	상장	2009－07－02	182,482	78.54	10.67	2	0	0	0	0	0
	몰트어퀴지션㈜	순수	비상장	2009－07－24	2,253,445	96.83	108.33	1	0	1	0	0	0
	엠피씨코리아홀딩스㈜	순수	비상장	2009－07－28	108,426	96.61	6.14	2	0	0	0	0	0
	씨앤에이치㈜	사업	상장	2009－09－30	110,018	51.08	4.26	2	0	2	0	0	0
	대성홀딩스㈜	사업	상장	2009－10－01	335,922	61.20	59.50	9	1	1	0	0	0
	㈜한진해운홀딩스*	순수	상장	2009－12－01	380,404	66.83	24.46	2	1	9	0	0	0
	㈜한화도시개발*	사업	비상장	2009－12－02	361,972	97.07	36.57	8	0	0	0	0	0
	씨에스홀딩스㈜	순수	상장	2010－01－05	100,595	69.77	0.15	1	0	0	0	0	0
	KC그린홀딩스㈜	순수	상장	2010－01－01	104,168	54.20	42.50	11	0	4	0	0	0
	㈜에실로코리아	사업	비상장	2010－01－01	104,672	79.18	13.49	1	0	1	0	0	0
	우리조명㈜	사업	상장	2010－01－01	103,976	61.52	36.11	2	1	2	0	0	0
	㈜셀트리온헬스케어	순수	비상장	2010－01－01	131,027	57.28	3,098.88	5	2	2	0	0	0
	㈜녹십자홀딩스	순수	상장	2010－01－01	516,990	52.02	67.25	6	1	4	0	0	0
	㈜파라다이스글로벌	사업	비상장	2010－02－02	350,096	52.80	121.47	6	2	6	0	0	0
	㈜유승홀딩스	사업	비상장	2010－01－01	102,147	90.11	6.65	1	0	1	0	0	0
	몰트홀딩㈜	순수	비상장	2010－01－01	1,189,371	99.48	31.88	1	0	1	0	1	0
	디아이피홀딩스㈜*	순수	비상장	2010－01－01	292,000	65.96	77.61	3	1	0	0	0	0
	엔오브이코리아홀딩(유)	순수	비상장	2010－01－01	162,969	99.05	262.24	1	0	0	0	0	0
	㈜코오롱*	순수	상장	2010－01－01	538,750	54.30	35.50	5	3	23	1	1	0
	㈜티브로드 한빛방송	사업	상장	2010－01－01	196,398	50.38	13.79	3	0	4	0	0	0
	소계 (82개사)		47개		705,794	**77.27**	**84.73**	**447**	**92**	**340**	**23**	**29**	**0**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계속)

(단위 : 백만원, %, 개)

구분	지주회사명	사업/순수	상장여부	설립/전환일	자산총액	지주비율	부채비율	자/손/증손회사 수 (상장회사)					
								자회사 (상장)		손자회사 (상장)		증손회사 (상장)	
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	순수	상장	2001－03－27	15,620,192	97.86	27.96	11	2	13	0	1	0
	㈜신한금융지주회사	순수	상장	2001－09－01	25,913,566	87.48	47.19	12	1	6	0	0	0
	한국투자금융지주㈜*	순수	상장	2003－01－11	2,858,022	78.58	57.91	5	0	5	0	2	0
	㈜하나금융지주	순수	상장	2005－12－01	10,402,231	98.60	16.40	6	0	0	0	0	0
	에이오엔이십일(유)	순수	비상장	2007－01－01	305,441	60.37	0.90	8	0	1	1	0	0
	㈜골든브릿지	순수	비상장	2008－01－01	137,048	86.74	53.27	5	2	0	0	0	0
	㈜KB금융지주	순수	상장	2008－09－29	16,568,019	98.30	4.67	8	0	2	0	0	0
	한국투자운용지주㈜*	순수	비상장	2008－10－02	117,023	90.27	0.12	2	0	0	0	0	0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순수	비상장	2009－06－30	3,877,754	100.00	0.00	3	0	2	0	0	0
	산은금융지주㈜	순수	비상장	2009－10－28				5	1	2	0	0	0
	소계 (10개사)		5개		75,799,296	**88.69**	**23.16**	**65**	**6**	**31**	**1**	**3**	**0**
총계	92개사		52개		1,468,949	78.40	78.51	512	98	371	24	32	0

주1) 2010년 이후 설립전환 회사는 2009년 12월기준
2010년 이전 설립전환 회사는 2009년 9월 기준
2) 순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순
3) 별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의미
4)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